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이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3(공제조합의 사업)에 따른 자금대여, 보증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이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13을 신설한다.

제18조의1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3제1항1호에 따른 자금의 대여
2. 법 제20조의3제1항2호에 따른 채무 보증
3. 법 제20조의3제1항3호에 따른 이행 보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8조의1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3제1항1호에 따른 자금의 대여 2. 법 제20조의3제1항2호에 따른 채무 보증 3. 법 제20조의3제1항3호에 따른 이행 보증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연 락 처	044 - 203 - 2450